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 3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3월 3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[대통령령제24914호(2013.12.11)]이 제정,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일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를 폐지

나. 주요내용

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[대통령령 제24914호(2013.12.11)]이 제정, 공포·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를 폐지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」 [대통령령제24914호(2013.12.11)]이 제정되어 2014.01.01 시행됨에 따라, 우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, 동 조례 폐지로 인한 인사관리 업무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,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참고로 서울시 25개구중 23개구가 동조례안 폐지를 진행중에 있으며 2개구 (종로, 은평)는 기폐지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